

KOICA 국별협력사업 선금 지급 및 정산 가이드라인 v.2 [외부용]

[개정이력] 2026.6월 / KOICA 지역사업총괄실

구분	시행일자	주요 개정사항
가이드라인 v.1	2025년 9월	- 가이드라인 최초 수립, 하반기 회계정산 교육을 통해 안내 - 외부용 가이드라인 최초 배포(2026.1월)
가이드라인 v.2	2026년 6월	- 선금 정산방식 의무 적용대상 변경 (전체계약 → 2025.9월 이후 공고 입찰하여 체결된 계약) - 재정경제부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른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2026.4.1.)」 개정사항 반영

1 개요 및 적용범위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사업	KOICA 국별협력사업	
적용 계약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국내 발주 계약	
계약 유형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 (물품 구매 계약 제외)	
시행 시점	선금 지급	2025년 9월 공고 입찰(전면 적용), 2025년 9월 이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기존 계약(선택 적용)
	선금 정산	상기 회차별 선금지급 계약에 대해, 2026년 1월 정산부터 적용
소관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경비 산정지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등	

2 선금 지급 방식 세부사항

가. 기본 방향

- 계약별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내 회차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나. 세부 적용 범위

- 신규 계약 : 2025년 9월 공고된 입찰 계약 전부 적용
- 기존 계약 : 전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외대상) ① 선금 지급·정산 결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 지급 가능 잔여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 한시적 제외, ② 내규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4조(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체결된 장기계속계약 제외

다. 선금 지급 단계별 과업

① 최초 사업수행계획서([별지] 포함) 제출

- 계약체결 완료 후 계약 상대방은 총 계약기간·회차별 기간 및 총 계약금액·회차별 예산액이 각각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서([별지] 포함)를 제출하며, 협력단은 검토 후 승인
- *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회차별 사업정보 양식 [붙임1] 참조
-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명시된 회차별 예산액은 정산 결과에 따라 변경 필요

② 선금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이 완료된 이후 계약 상대방은 선금 필요 여부를 협력단에 전달하고, 선금 신청 희망 시 협력단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른 선금 지급 필수서류 제출
- (최근 변동사항) 정부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 및 계약예규 개정(2026.4.30.자부터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선금 전용계좌(용역비 전용계좌)* 사용 필요
- ※ 협력단은 자체 내규 「용역경비 산정지침」 제5조(용역비 전용계좌의 신설) 조항에 의거, 이미 용역 계약별 별도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해당 계좌를 통해 선금 별도 관리 실시
- (선금 지급 필수 서류) 선금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지급 필수 서류	선금보증증권(또는 지급보증 약각서), 선금지급신청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지급신청서 양식 [붙임2] 참조, ** 선금사용계획서 양식 문서 [붙임3] 참조

③ 사업수행계획서 [별지]에 명시된 N회차 예산액 기준 N회차 선금 신청

- 선금 신청 시기별 최대 선금 지급비율 및 지급방식을 확인하고, N회차 예산액 기준 N회차 선금 신청
- 단, 계약예규 개정('26.7월) 이후부터는 ▲최초 지급 시 지급 가능한 선금 비율과 그 예외사유, ▲추가지급 시 선금비율과 그 전제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선금 지급비율 협력단과 협의 必
- (지급비율/지급방식) 시기별 선금 지급비율 및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음

선금 지급시기	선금 지급비율 및 지급방식		
2025.9.1.~12.31.	각 회차별 예산액의 100% / 선금 특례 기간		
2026.1.1.~6.30.	각 회차별 예산액의 70%		
2026.7.1.~	최초 지급	선금 비율	각 회차별 예산액의 30~50%(=의무지급률*) 이내
		예외 사유	다만, 발주기관의 판단하에 필요시 (예: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의무지급률을 초과하는 선금 지급 허용
	추가 지급	선금 비율	각 회차별 예산액의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전제 조건	①목적에 따른 선금 사용 또는 ②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 가능

※ 필요시 최초 지급 예외 사유와 추가 지급 전제 조건에 대해 선금 신청 전 협력단과 사전 협의 진행

- (의무지급률 확인 방법) (1) 대상 계약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2) 해당 계약 N회차 계약 금액에 따른 선금 의무지급률 확인 후, (3) N회차 계약금액 x 의무지급률 이내 선금 신청

구 분	회차별* 계약금액	선금 의무지급률	구 분	회차별* 계약금액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100억원 이상	3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원 이상	30%
	2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0%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0%
	20억 미만	50%		3억원 미만	50%

* (계약예규 제34조제9항)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략)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1 N회사 정산 종료 전 N+1차 사업기간이 착수된 경우, N+1차 선금의 신청 관련

- N회차 예산액 정산 완료 이전 N+1회차가 시작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서는 N+1회차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N+1회차 선금 지급 가능. 이때 선금 지급비율 및 지급방식 등은 상기 ③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
- (방식) N+1회차 사업기간 착수 이후, 해당 시점 사업수행계획서 상 명시된 N+1회차 예산액 기준 선금 신청
- (필요성) 전반적인 사업수행 지연 방지 및 계약별 현장 장기 파견인력 안전경비 지급 공백 등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N회차 예산집행 정산 및 변경 사업수행 계획서 승인 기간(2-3개월) 간 발생하는 예산 운영 및 선금 지급 지연 방지 필요

3 선금 정산 방식 세부사항

가. 기본 방향 및 개선 배경

- 회차별 선금 지급 및 관리 계약에 대해 선금 정산 공제 방식을 ‘선입선출 공제’로 변경
 - 현행 선금 공제는 "선금공제비율(선금잔액/미정산 총계약금액)"을 적용하여 당회차 집행 금액에서 "선금공제비율"만큼 선금을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회계상 이동평균법 적용)
 - 선금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회차별 선금 관리 도입에 따라, 상기 정산 방식 유지 시 매 정산 시마다 ‘미정산 회차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선금 비율 공제가 되어야 하나, 회차별 예산액은 총 계약금액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 현행 방식 유지 시 행정상 혼선 발생 가능성 높음
 - 이에 회차별 선금 관리를 도입한 계약에 대해, ‘선입선출 공제’ 방식 적용 실시하고, 정산 결과 공제가 완료된 시점에 선금보증증권 반환 예정
- 선금 ‘선입선출 공제’ 시, ‘총 계약금액’이 아닌 ‘회차별 예산액’ 기준으로 계산

▶ [참고] 선금 비율공제 및 선입선출 공제 방식 비교

선금 비율 공제		선입선출 공제	
• 공제 방식 : 정산 확정 금액에서 매 정산 회차별 선금 지급비율 공제 후 기성금 지급 • 선금 공제 계산 : 총 계약금액 기준		• 공제 방식 : 정산 확정 금액에서 선금 지급액을 모두 소진 후 기성금 지급 • 선금 공제 계산 : 회차별 예산액 기준	
< 예시 >		< 예시 >	
전체 계약금액	1,000,000원	1회차 예산액	1,000,000원
선금 지급액	400,000원(40%)	선금 지급액	400,000원(40%)
1차 정산 금액	400,000원	중간 정산 금액	400,000원
1차 기성금 지급	240,000원	중간 기성금 지급	0원
선금 공제액	160,000원	선금 공제액	400,000원
최종 정산 금액	600,000원	최종 정산 금액	600,000원
최종 기성금 지급	360,000원	최종 기성금 지급	600,000원
선금 공제액	240,000원	선금 공제액	0원

나. 세부 적용범위 및 시점

○ 신규 계약 : 2025년 9월 공고된 입찰 계약 전부 적용

○ 기존 계약 : 2025년 9월 이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고 지속 관리할 계약에 선택 적용
단, 내규 「조달 시행세칙」에 따라 체결된 장기계속계약 제외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 정산 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업수행기관 자체 자금 일정 조정 기일 등 고려하여 신설 차년부터 도입

※※ (‘26.4월 변동) 상기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기존 계약은 기존 정산방식(선금 비율 공제방식) 유지 가능.
동 지침변경에 따른 정산방식 변경 범위 및 세부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동 문서 5p 표 참조

다. 선금 정산 단계별 과업

① 회계정산 진행 및 정산보고서 수령 후 선금 공제 비율 확인

- 기존 계약의 경우 회계정산 신청 전 협력단 사업 담당자와 선금 정산 방식에 대해 사전 협의必

※ 정산 방식 관련 고려 사항 [참고1], [참고2] 확인

- 정산 결과 각 회차의 선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 선금보증증권 조기 만료 처리 실시

② N회차 사업기간 종료 시, N회차 예산액 정산 실시

③ N회차 예산액 집행·정산 완료 이후,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변경(안) 제출

수행주체	내 용
사업수행자	- 사업수행기관은 N회차 기간 종료 후 회차별 정산을 실시 - 정산 완료 후 N회차 최종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변경(안) 제출 - 이때, 사업수행계획서 [별지]에 명시된 회차별 예산액은 회차별 예산액 정산 결과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다만, 기지급된 선금 잔액이 발생한 상황에는 코이카의 결정을 따름.

수행주체	내 용
KOICA	- KOICA는 검토 후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변경 승인 공문 발송 필요 - 검토 시 고려사항 → (원칙) N회차 예산액 정산 완료 결과 <u>예산액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이월</u>. 해당 잔여 과업이 이행될 시기(각 회차)로 예산을 각각 조정하여 배분하도록 안내 → (예외) 단, <u>기 지급된 선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u> (1) 선금 지급 목적 달성 시점까지 N회차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과업 및 예산 집행 * 증권 기간 재검토 必. ** N회차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 이월 시기는 N+1회차 사업기간 중이어도 무방 (2) 선금 잔액 반납 (이때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선금 집행이 지연된 경우 잔액 + 이자 반납 필요)

▶ [참고1] 선금 지급 사례별 정산 방식 변경 범위 ('26.4.월 변동)

번호	선금 지급 방식	선금 정산 방식	비고
①	회차별 선금 지급한 계약	선입선출 공제	25.9월 이후 공고 계약 일체
②	총 계약금 기준 선금 지급한 계약	선금 비율 공제	
③	총 계약금 기준 선금 지급 이후, 회차별 예산액 기준 추가 선금(n차 선금)을 지급한 계약 ※ 공제 방식 선택 시 유의사항 하기 참고	선입선출 혹은 선금 비율 공제 (선택 가능)	- 단, 정산방식 선택 후 중도 변경 불가 - 정산방식 선택 시 KOICA-수행기관-회계법인 간 사전 협의 필수
④	총 계약금 기준 선금 지급 이후, 선입선출 방식으로 정산 완료한 계약 ※ 정산 방식 원복이 필요한 경우 하기 참고		

▶ [참고2] 선금 정산 방식 변경 시 고려사항

③ 총 계약금 기준 선금 지급 이후, 회차별 예산액 기준 추가 선금을 지급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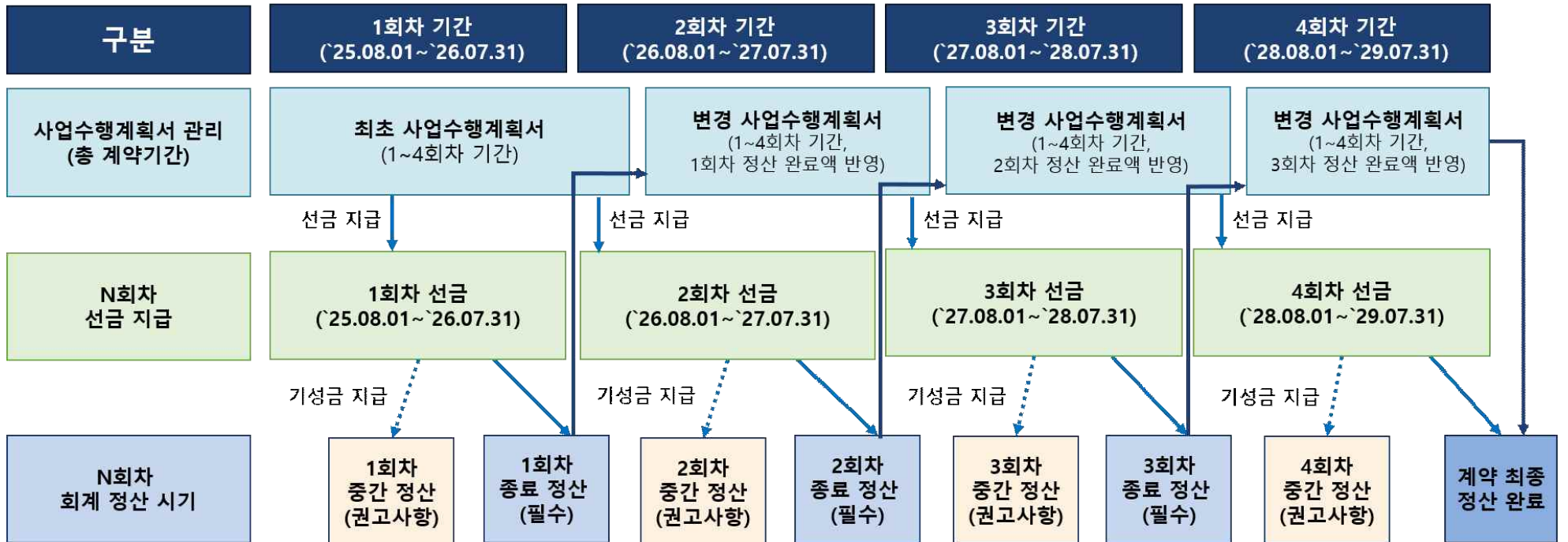
- 선금 비율 공제 선택 시,
 - 기 지급된 추가 선금의 경우 최종 정산까지 선금 잔액이 남아있게 되는 바, 선금보증증권 기간을 필히 (계약 종료일 + 60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아닐 경우, 증권 기간 연장 필수
 - 선금 비율 공제 선택 이후, 추가 선금(n+1~차 선금) 지급은 불가함.
- 선입선출 공제 선택 시,
 - 해당 회차 만료 후 선금보증증권 반환 가능. 단, 최초 증권기간(계약 종료일 + 60일 이상)은 유지
 - 각 회차별 추가 선금(n+1~차 선금) 지급 가능

④ 총 계약금 기준 선금 지급 이후, 선입선출 방식으로 정산 완료한 계약

- 선입선출 공제로 정산 완료한 이후 비율 공제로 원복하는 방안은 두 가지 중 선택 가능
 - 1안) 정산보고서 재발행
 - 회계법인과 협의 후 비율 공제한 정산보고서 재발행 요청
 - 수행기관은 비율 공제용 정산보고서 제작성 필요
 - 추가 기성 지급 필요시 대금 지급
 - 2안) 선금 공제 비율 조정
 - 차후 정산 시 선금 공제 잔액을 기준으로 공제 비율을 조정하여 정산

참고 선금 지급 및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관리 방안

• 예시: 총 계약기간 2025.08.01 ~ 2029.07.31(4년)



/끝/